

형법 해설

문 1] ③

- ③ (대판 1999. 12. 24 99도30003)
- 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 ②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 ④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문 2] ③

- ㉠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 ㉡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문 3] ①

- ①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넣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사고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48 판결)
- ②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6601
- ③ 대법원 1998. 11. 8. 선고 88도928
- ④ 대법원 2007. 10. 26. 2005도8822

문 4] ②

- ②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문 5] ③

구체적 부합설과 법적 부합설의 결론 동일

구체적 사실의 착오중 객체의 착오 / 추상적 사실의 착오

- ㉠ 구체적 사실의 착오중 방법의 착오
 ㉡ 추상적 사실의 착오중 방법의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중 객체의 착오
 ㉣ 병발된 사실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중 방법의 착오)
 ㉤ 추상적 사실의 착오중 방법의 착오

	종류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통설·판례)	추상적 부합설
구체적 사실	객체	발생사실기수		
	방법	인식사실미수 vs 발생사실과실	발생사실의 기수	
추상적 사실	객체	인식사실미수 vs 발생사실과실		경한고의 중한결과 → 경죄기수 vs 발생과실
	방법			중한고의 경한결과 → 중죄미수 vs 경죄기수

일치하는 것은 ㉡ ㉢ ㉤ 3개이다.

문 6] ②

- ㉠ 결과적 가중범 처벌 규정 있다 (강도치사상 인질치사상)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을 수 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도1075 판결)

문 7] ④

- ④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서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 ① 대법원 2006. 9. 8. 2006도148
 ②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문 8] ②

② 허용구성요건의 존재에 대한 착오

- ①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③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도64 판결
 ④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도1560 판결

문 9] ①

- ㉠ 형법 (제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
 ㉡ 대법원 1973. 1. 30. 72도2585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문 10] ④

- ④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①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06
 ②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③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206 판결

문 11] ②

- ②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문 12] ④

- ④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도1373 판결)
 ①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②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③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문 13] ④

- ㉠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예비음모로 처벌하고 효과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로 처벌한다.
 ㉡ 대법원 1982. 4. 27. 82도274

문 14] ③

- ③ 甲은 중한 결과에 대한(신분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제 15조 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으로 처벌되고 乙은 부진정 신분이 없으므로 제 33조 단서가 적용되어 보통살인으로 처벌된다.

문 15] ④

- ㉠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 ㉡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2131
-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 ㉣ 피고인의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되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위 2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6.25. 선고 91도643 판결)

문 16] ③

- ㉠ × 폭행죄 및 존속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 × 살인죄에는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 ㉣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680

문 17] ④

- ④ 중유기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한다.

중상해죄(제258조 1항)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중유기죄(제271조 4항)	"
중권리행사방해죄(제326조)	"
중손괴죄(제368조 1항)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발생
중체포·감금죄(제277조)	가혹한 행위 / 불법가중요건

- ①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3952

문 18] ③

- ③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위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①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 ④ 대법원 1986.7.22. 선고 86도1140

문 19] ③

- ③ 인질강도죄에는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① 대법원 1991.8.13. 선고 91도1184
- ④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도8485

문 20] ①

- ㉠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 판결)
- ㉡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3716
- ㉢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8805
- ㉣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791

문 21] ④

- ④ 피고인들의 소행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89.2.14. 선고 88도899 판결)
- ②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 ③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문 22] ①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신용훼손죄	○	○	×	
업무방해죄	○	○	○	
경매·입찰방해죄	×	○	○	기타방법
공무집행 방해죄	×	○		폭행·협박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죄		○	○	
위계위력 간음추행죄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	

문 23] ④

- ㉠ 대법원 2009. 9. 10. 2009도4635
 ㉡ 대법원 2006. 9. 14. 2006도2824
 ㉢ 대법원 2010. 4. 29. 2009도14643

문 24] ①

- ①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3.16. 선고 92도3170 판결)
 ② 대법원 1988.9.20. 선고 86도628
 ③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714
 ④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문 25] ①

- ㉠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9008 판결)
 ㉢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운반하기 위하여 소지하게 된 자가 그 금원중 일부금을 꺼내어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피고

인의 운반을 위한 소지는 피고인의 독립적인 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점유에 종속하는 점유의 기관으로서 소지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함에 돌아가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대법원 1966.1.31. 선고 65도1178 판결)

- ㉣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족하고 주관적 경제적 가치 유무의 판별은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서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76.1.27. 선고 74도3442 판결)

문 26] ②

-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17 판결)
 ㉡ 대법원 1981.3.24. 선고 81도409
 ㉢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문 27] ①

-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4665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170

문 28] ④

- ④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문 29] ②

- ②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1.21. 선고 85도2472 판결)

- ④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15350

문 30] ③

- ③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와 달리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도2168 판결)

- ①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875
②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사안에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피고인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므로 가압류결정 정본이 을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데도,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행위의 선후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3999 판결)
④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279

문 31] ②

- ②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7421 판결)

- ① 대법원 2002. 3. 26. 2001도6641.
③ 대법원 1984.7.24. 84도1245

문 32] ②

- ②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미수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4688)
③ 대법원 2002. 4. 26. 2001도6903
④ 대법원 2008. 11. 13. 2006도755

문 33] 정답 : ④

- ④ 형법 제207조 제3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외국에서 통용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만일 그와 달리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이는 위 처벌조항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

문 34] ④

- ④ 배서인의 주소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6.6.24. 선고 84도547 판결)

- ① 대법원 1983. 6. 14, 81도2492
- ② 대법원 1982. 1. 2, 82도677
- ③ 대법원 1973. 6. 12, 72도1796

문 35] ③

③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한 사안에서, 위 종업원들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9.2.26. 선고 2006도3119 판결)

- ① 대법원 1995. 2. 10, 94도2266
- ② 대법원 2008. 12. 8, 2001도1335
- ④ 대법원 2009. 5. 14, 2008도 10914

문 36] ①

- ①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1.22. 선고 94도2528 판결)
- ② 대법원 2001. 9. 18, 2000도5438
- ③ 대법원 1999. 6. 25, 99도1900
- ④ 대법원 1976. 9. 28, 75도3607

문 37] ②

②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 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위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위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라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리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의 위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7412 판결)

- ① 대법원 2010. 10. 14, 2010도8591
- ③ 대법원 2011. 4. 28, 2007도7514
- ④ 대법원 2011. 2. 10, 2010도15986

문 38] ③

- ③ 대법원 2003. 2.14 2000도5374 .
- ①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 ②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 ④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656 판결)

문 39] ③

- ③ 대법원 1990. 2. 23, 89도1212
- ①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범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위증 사건의 허위진술 일자와 같은 날짜

에 한 다른 허위진술로 인한 위증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문 40] ②

- ② 1통의 고소,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9.9.26. 선고 88도1533 판결)

- ① 대법원 1991. 10. 11, 91도1950
- ③ 대법원 1990. 8. 14, 90도595
- ④ 대법원 2007. 3. 15, 2006도9435